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019.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125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9월 9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9월 10일(화)

2. 제출사유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 신설(안 제6조의2)
- 나.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 상호·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안 제13조제9호)
- 다.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16조제5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19. 8. 27. ~ 9. 1. (제출된 의견 없음)
-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9.3.)

5. 검토의견

○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간 분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3조제9호를 신설하여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비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이와 같은 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국가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일본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여 양국간 무역이 어려워지고 상호 여행객 급감 등으로 관련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참고자료 -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금융 애로 신고센터’ 상담접수 2019년 9월 현재 300건, 5,400억 원에 달함.
 〈쿠키뉴스, 2019.9.17〉

- 이러한 사정의 여파로 여행업, 무역업, 부품소재업, 숙박업 등의 중소기업 매출이 저조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피해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피해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2천억 원을 활용해 자구책을 제공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가능한 행·재정력을 집중 가동하고 있음.

-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지원을 위해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관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수출규제 피해 관련 업종별 현황(2019년 8월 기준, 마포구)

구 분	계	무역업	여행업	숙박업	일식음식업
업체 수	2,345	391	979	470	505

- 다만,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중 업체별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이에 따른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11월중 업체별 결과 통보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 바, 피해사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는 않은지, 이러한 사유로 대상 선정에 있어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